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2. 02.)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문청약 불가”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은 방문청약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인터넷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일원 서울수서 A2BL 행복주택 1,08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서울수서 A2BL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제2호 나목에 따라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공작물(농막)거주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단, 우선공급은 청년계층으로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강남구인 중소기업근로자만 신청가능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단, 우선공급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강남구인 중소기업근로자만 신청가능**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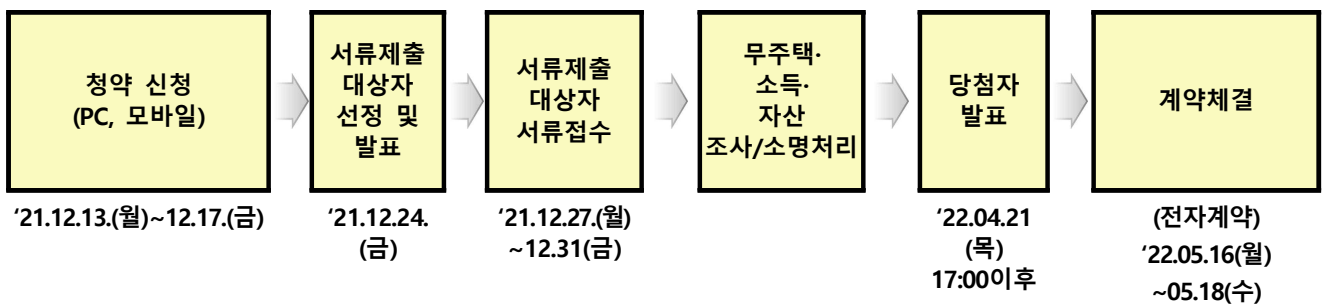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공작물(농막) 거주자**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비닐 간이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관(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서 추천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급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으로서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서 정한 입주자격 제한(불법 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현장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서울수서 A2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1-000934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14A	대학생	54	124	14.69	7.3183	2.0293	8.5111	32.5487	46,920	2,346	44,574	160,310	(+)19,000	65,920	65,310	6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023년 12월						
	청년 (소득無)	70							49,680	2,484	47,196	169,740	(-)41,000	5,920	245,720									
	청년 (소득有)		14						14	41,400	2,070	39,330	141,450	(+)20,000	69,680				69,740	(-)43,000	6,680	259,320		
	주거급여 수급자	41,400								2,070	39,330	141,450	(-)36,000	5,400	216,450				(+)15,000	56,400	66,450	(-)36,000	5,400	216,450
26A	청년 (소득無)	15	15	26.54	13.2219	3.6664	15.3767	58.805	83,980	4,199	79,781	286,930	(+)34,000	117,980	116,930	6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023년 12월						
	청년 (소득有)								36	36	88,920	4,446	84,474	303,810	(-)73,000				10,980	439,010	(+)36,000	124,920	123,810	(-)77,000
	주거급여 수급자	74,100	3,705								70,395	253,170	(+)30,000	104,100	103,170				(-)64,000	10,100	386,500			
26B	고령자 (주거약자)	54	54	26.54	13.2219	3.6664	15.3767	58.805	93,860	4,693	89,167	320,680	(+)38,000	131,860	130,680	20								
36A	청년 (소득無)	13	13	36.84	18.3532	5.0893	21.3443	81.6268	116,620	5,831	110,789	398,450	(+)47,000	163,620	163,450	6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023년 12월						
	청년 (소득有)								160	160	123,480	6,174	117,306	421,890	(-)101,000				15,620	608,860	(+)50,000	173,480	171,890	(-)107,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7,200	6,860								130,340	468,760	(+)56,000	193,200	188,760				(-)119,000	18,200	716,670	6~10		
	고령자	2	2						130,340	6,517	123,823	445,320	(+)53,000	183,340	180,320				(-)113,000	17,340	680,730	20		
36B	청년 (소득無)	10	10	36.60	18.2336	5.0562	21.2053	81.0951	116,620	5,831	110,789	398,450	(+)47,000	163,620	163,450	6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023년 12월						
	청년 (소득有)								19	19	123,480	6,174	117,306	421,890	(-)101,000				15,620	608,860	(+)50,000	173,480	171,890	(-)107,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7,200	6,860								130,340	468,760	(+)56,000	193,200	188,760				(-)119,000	18,200	716,670	6~10		
	고령자	2	2						130,340	6,517	123,823	445,320	(+)53,000	183,340	180,320				(-)113,000	17,340	680,730	2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6	66	44.89	22.3636	6.2014	26.0084	99.4634	167,200	8,360	158,840	571,260	(+)68,000	235,200	231,260	6~10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	13	44.90	22.3686	6.2028	26.0142	99.4856	167,200	8,360	158,840	571,260	(+)68,000	235,200	231,260	6~10								
													(-)146,000	21,200	875,420									
44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2	12	44.66	22.2490	6.1697	25.8751	98.9538	166,400	8,320	158,080	568,530	(+)68,000	234,400	228,530	6~10								
													(-)145,000	21,400	870,61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4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4A·26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청년(소득無)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14A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냉장고장, 수납장,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이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4A형 대학생/청년 계층 ↔ 14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26A형 청년 계층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36A형 청년 계층 → 36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A형 고령자 계층
 - 36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A형 청년 계층 → 36A형 고령자 계층
 - 36A형 고령자 계층 → 36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A형 청년 계층
 - 36B형 청년 계층 → 36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B형 고령자 계층
 - 36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B형 청년 계층 → 36B형 고령자 계층
 - 36B형 고령자 계층 → 36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36B형 청년 계층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계층의 경우 2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㉗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㉗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 단 우선공급 자격 불충족(착오신청 등)으로 탈락한 자는 부적격처리 되어 일반공급 전환없이 탈락처리됨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강남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강남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3년 이상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천
	2순위	순위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14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

※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만)	1인	3,589,9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의 청년(소득無)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단 우선공급 자격 불충족(착오신청 등)으로 탈락한 자는 부적격처리 되어 일반공급 전환없이 탈락처리됨

• 우선공급 자격

선순위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 공작물(농막)거주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득 근거지가 있는	

- ※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닐 경우 우선공급 신청 불가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중소기업 근무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	근속기간 3년 이상

- ※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무기간 배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를 제출하여야 인정
- ※ 근무기간 인정 기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동일중소기업 연속근로기간을 말하며, 동일기업이 사업자번호 변경, 법인전환, 타 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된 중소기업인 경우 근무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4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㉔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㉔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맞벌이 부부는 461,252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중복시 전부 무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 단 우선공급 자격 불충족(착오신청 등)으로 탈락한 자는 부적격처리 되어 일반공급 전환없이 탈락처리됨
-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우선공급 자격

선순위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 공작물(농막)거주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득 근거지가 있는	

- ※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닐 경우 우선공급 신청 불가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중소기업 근무기간	근속기간 5년 이상	근속기간 5년 미만

- ※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무기간 배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를 제출하여야 인정
- ※ 근무기간 인정 기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동일중소기업 연속근로기간을 말하며, 동일기업이 사업자번호 변경, 법인전환, 타 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된 중소기업인 경우 근무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우선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단 우선공급 자격 불충족(착오신청 등)으로 탈락한 자는 부적격처리 되어 일반공급 전환없이 탈락처리됨

• 우선공급 순위

순순위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 공작물(농막)거주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 2순위만 적용)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강남구에 5년 이상 거주	강남구에 5년 미만 거주	강남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2.)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 단 우선공급 자격 불충족(착오신청 등)으로 탈락한 자는 부적격처리 되어 일반공급 전환없이 탈락처리됨

• 우선공급 순위

선순위	수서지구 내 비닐간이 공작물(농막)거주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남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 2순위만 적용)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강남구에 5년 이상 거주	강남구에 5년 미만 거주	강남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우 선 공 급 / 일 반 공 급	[인터넷·모바일 접수] '21.12.13.(월) 10:00 ~ '21.12.17(금) 17:00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접수가능	'21.12.24.(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1.12.27.(월) ~12.31.(금)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서류제출처]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임대공급운영부 "수서행복주택" 담당자 앞 ※ '21.12.31(금) 소인분까지 유효	'22.04.21.(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인터넷·모바일 계약] '22.05.16.(월) 10:00 ~ '22.05.18.(수) 17:00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계약가능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임대공급운영부) 입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게시합니다.
- * 당첨자 조회방법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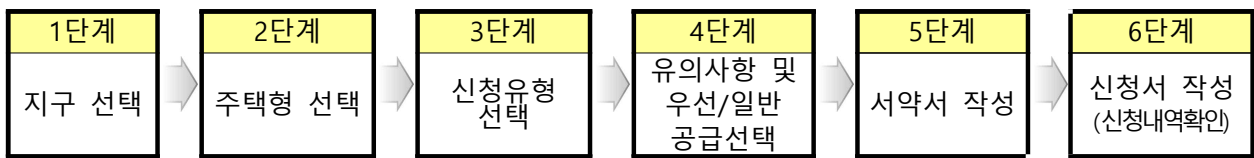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자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1.12.24(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1.12.27(월)~12.31(금)]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수서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울수서 행복주택 담당자 앞 필수 기입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021.12.13(월) 10:00 ~ 2021.12.17(금) 17: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
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1.12.13(월) 10:00 ~ 2021.12.17(금) 17: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
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12.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 123456-1***** (X)

※ 제출된 서류는 탈락 시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폐기처리)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단,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우선공급 자격 및 일반공급 순위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아래의 청년계층 '해당자만 제출'란 확인 	
	사회초년생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기여금납입확인서 등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p>[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한 자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방법></p> <p>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중소벤처기업청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신청하여야 함.</p> <p>②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신청자에 한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직접 통보</p> <p style="color: red;">※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서울중소벤처기업청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 LH 로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 서류미비로 부적격 처리되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각별히 유의</p> </div> <p>※ 본 서류는 발급에 상당기일이 소요되는 서류로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기간 이후 보완제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으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으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혼부부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세청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방법></p> <p>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중소벤처기업청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신청하여야 함.</p> <p>②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신청자에 한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직접 통보</p> <p>※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서울중소벤처기업청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 LH로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 서류미비로 부적격 처리되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각별히 유의</p> </div> <p>※ 본 서류는 발급에 상당기일이 소요되는 서류로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기간 이후 보완제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지방중소벤처기업청</p> <p>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p>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p>고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p>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p> <p>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p>
	<p>주거급여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p>주민센터</p> <p>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p> <p>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p> <p>주민센터 주민센터</p>

재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2. 04. 21. (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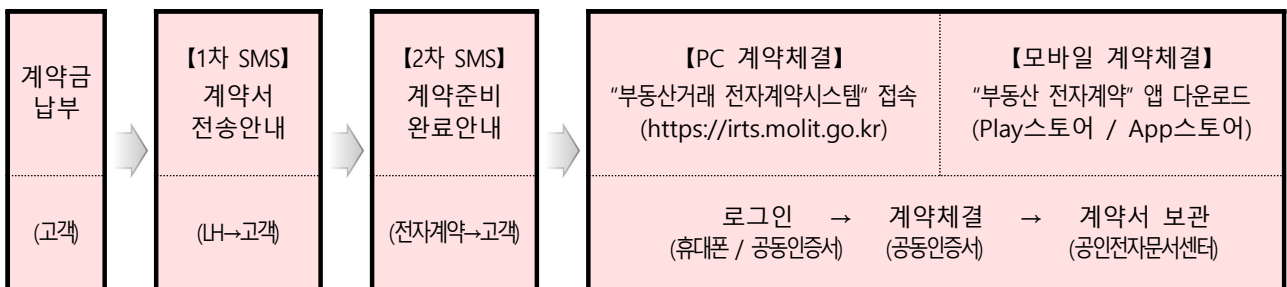
○ 전자계약 [기간 : 2021.05.16.(월) 10:00 ~ 2021.05.1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지방세정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501 1469 680">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 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배우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p>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p>지구 및 단지특성</p>	<p>■ 지구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1호, 2021.04.30)로 승인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북서측에 지하철 3호선 및 분당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수서역이 지구 내에 입지하여 있음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GTX(A노선 : 삼성~동탄)가 지구 내 지중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지구 내에 수서광주선(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동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이용이 지연될 수 있음 - 지구 남북측으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밤고개로, 동서측으로는 양재대로 및 광평로, 헌릉로, 자곡로 등이 있음 - 대상지는 헌릉 I.C, 송파 I.C, 수서 I.C, 내곡 I.C와 연접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교통시설과 연결되어 있음 - 지구 반경 2km이내에 세곡2지구 . 강남지구 . 수서지구를 비롯하여 문정도시개발사업 . 동남권 유통단지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있으며, 반경3km 이내에는 세곡지구 및 위례신도시가 입지하여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공공분양·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각 편의시설 등 설치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남측으로 자곡로, 서측으로 밤고개로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저소음포장을 계획하고 있음 -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남측 약 3km에 서울공항이 있으며,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동측에 연접하여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가 있으며, 차량정비에 따른 생활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구 내 환승센터부지에 지구 내외의 빗물의 배제를 위한 우수지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 내 근린공원에는 지중에 운영중인 SRT의 환기구, 전기시설, 통로, 화물용E/V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계획노선인 수서-광주선의 건설사업과정에서도 추가로 철도시설물이 지상에 노출될 수 있음
- 지구 내 경관녹지에는 조성과정에서 보행자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공동주택지 주변도로(밤고개로, 자곡로) 변에는 개방된 단지 구현을 위해 방음벽이 없으며, 도로에 저소음포장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근린공원 내에는 지중SRT 전기시설, 환기구, 화물용E/V 등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
- 경관녹지에는 조성과정에서 보행자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개방된 단지구현을 위해 방음벽이 없음
- 본 단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수서역세권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수서역세권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일부 동은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종합보육시설, 피트니스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1층 도로는 소방전용도로이며,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님.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각 동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단지이므로 옥탑 위에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본 단지의 세대내 일부 자재(타일, PL창호, 가구류 등)는 중소기업 자재를 사용함
- 팸플릿 등에 표현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정자재임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층의 복도 및 전실은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 발코니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비상탈출구(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임
- 우수입상관이 설치되는 세대는 실외기실 내부 및 세대경량칸막이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세대가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도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단, 경로당, 보육시설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 설치)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4A형의 경우 실외기실 안목치수 900mm이내이므로 실외기 규격에 따라 설치 불가한 제품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함(에어컨 가동 시 소음 및 온풍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재 없음
- 세대 내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와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주방배기는 각 세대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에서 세대별로 각각 옥상으로 공용배출하여 배기되는 방식으로 최상층 세대의 경우 결로,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소방용 드레인 앵글밸브가 일부세대 욕실 천정 내부에 설치되며 필요시 드레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지하주차장 1층 팬룸에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나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동지하, 입상배관, 복도 천장배관, PD내부 등 일부배관들은 동파방지를 위한 발열선이 시공되어 있음
 - 중복지 아파트이므로 환기(배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 설치되어있는 환기탑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동호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에는 강제배기 방식이 아닌 자연환기방식이 적용되었음
 - 발코니에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14TYPE의 경우 발코니에는 개별 세탁기 설치가 불가함**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절대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노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진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율	★
	23. 바이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홈네트워크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효성중공업(주) (578-87-00896) ㈜동산테크 (105-81-41722) 대라수건설(주) (409-81-74106) 신성종합건설(주) (107-81-22532)	-	-

11.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욕 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정 세면기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싱크대(물버림대)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벽센서등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시각경보기	
주동·통로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
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평일 9:00~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li style="padding-left: 20px;">-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li style="padding-left: 20px;">-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2021. 12. 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